

「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」 안내



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

「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」 안내



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별·업종별 사업주 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**공동안전관리자***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드립니다.

* 상시근로자 5~49인 사업장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는 자

❖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번호(1544-3088) 및 관할 일선기관으로 문의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 또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(clean.kosha.or.kr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1 지원대상

- 공동안전관리를 희망하는 사업주 단체,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, 산업단지 관리단체 등
※ 건설업 관련 사업주 단체 및 고용노동부 지정기관(안전관리전문기관 등) 제외

2 지원조건

- (지원규모) 공동안전관리자 총 600명(예산규모 120억원)
- (지원기간) 계약체결일 ~ '24년 12월 ※ '24년 최대 8개월간
- (지원비용) 채용인원 당 매월 최대 250만원 한도(채용 및 운영비의 80% 수준)
※ 참여사업장 수 및 근로자수를 고려하여 하나의 합·단체에서 2명 이상 채용가능

3 참여 신청방법

- (신청방법) 관할 공단 31개 일선기관에 온-오프라인(우편 또는 방문, 메일) 접수 (✉ jsa@kosha.or.kr)
- (제출서류) 참여 신청서, 단체(사업자)등록증 또는 단체 증명서류 각 1부

4 자격기준 등

- (공동안전관리자 자격기준)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- ① (경력)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 실무 경력 2년 이상 보유자
 - ② (경력)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실무 경력 1년 이상 보유자
 - ③ (자격)산업안전 관련 자격증* 보유자
* 산업안전기사, 산업안전산업기사, 기술사(전기안전, 화공안전, 기계안전), 산업안전지도사(전기, 화공, 기계)에 한함
- (공동안전관리자 주요업무)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월 1회 이상 사업장 방문 컨설팅을 통해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
 - ① 사업장내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상시교육 실시
 - ② 현장컨설팅 및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
※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은 소속 직원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함